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태욱, 문희성, 김도운
홍영진, 강혜순, 문기호
이명녀, 정재환, 안영호
박경흠

1. 제정이유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용차량의 이용 횟수 및 기간, 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바.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74조 및 제94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6. 2. 13. ~ 2. 25.(12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익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과 공유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유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자”란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5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자의 자격, 차량 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용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횟수 및 기간) ①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 (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정비 또는 안전상 운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공용차량의 원활한 관리·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할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아니하며, 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일 현재 2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자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것
2.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않을 것
3. 영리 목적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
4.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9.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

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차량 출고 후 이용자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것

12. 차량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할 것

제13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 작성)

			이용자 자격명	
이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주 소	
운전자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면허	구분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연 락 처
운전자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면허	구분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연 락 처
내 용	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희망차량		차량수령	월 일 시 분
	행 선 지		차량반납	월 일 시 분
	이용목적			
	탑승인원		특이사항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관계)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정하는 수령 및 반납장소			
<p>「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p> <p><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간의 경력 필수 제출)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위와 같이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사항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용자: (서명)</p>				
<p>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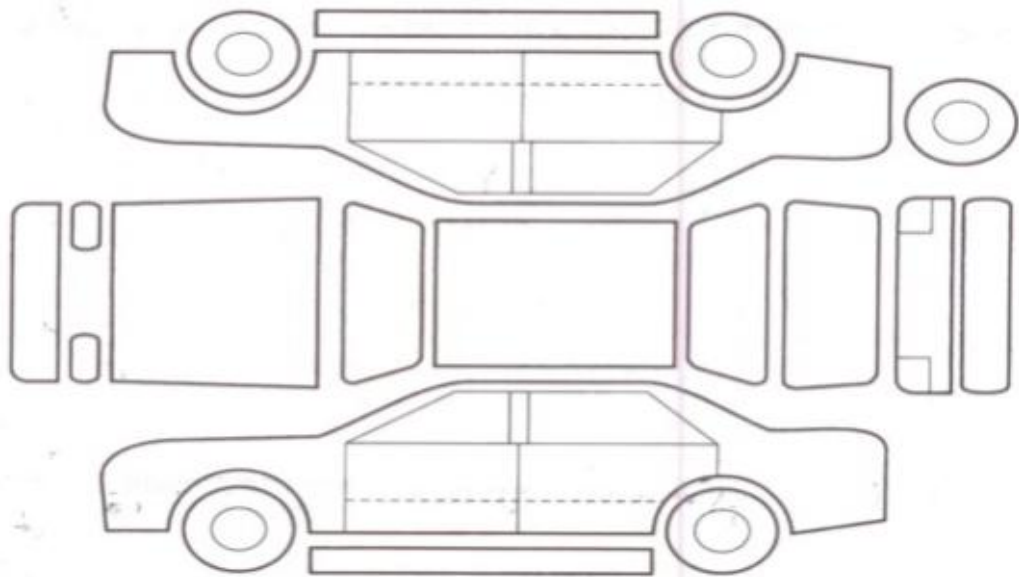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유류게이지(배터리 충전량) 및 차량 내·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

*자동차 외관 손상부위 = V + (기호표시)



수령확인서				반납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시				일시			
수령자	성명		서명/인	반납자	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담당자	계장	결 재

차량번호			전일 총 운 행거리		km	유 류 수 불 현 황	전일양	1/4	2/4	3/4	F
이 용 자	주 소		금일 운행거리		km		급유량 (충전량)	ℓ(%)			
	성 명 (연락처)	(01 - -)	최종 총 운 행거리		km		소비량	ℓ(%)			
운전자1 성명 (연락처)			운전자2 성명 (연락처)				남은양	1/4	2/4	3/4	F
승차자	이용목적	목적지	차 량 인 수			차 량 입 고		서 명			
			일 시 분			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의 운전은 만 2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무인화 장치를 활용하여 입고된 후 차량의 손상, 연료 미충전 등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차량 출고 후 이용자(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무인화 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수령 및 반납은 중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에 따르도록 한다.
9.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0. 차량수령시간(수령일): 09:00~13: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14:00~18:00
11.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12.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 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000-0000-0000, 0000, 0000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이 용 자:
년 월 일

확인	담당자	계장	과장
	(서명)		

이용 관련사 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이용 자	성 명		운 전 자	성 명
		생년월 일			생년월 일
		연 락			주 소
		처 성			연 락
	운 전 자	성 명		보 험 회 사 명 사 고 접 수 번 호	처 성
		생년월 일			보 험
		주 소			회 사 명
		연 락			사 고
		접수번호		사고차량 사진	
보 험					
회 사 명					
사 고					
접 수 번 호					
사 고 일 시					
사 고 관 련 사 항	사 고 장 소				
	발 생 사 유				
	사 고		차 량		
	피 해 내 용		수 리 공 장		
	조 치 사 항		기 타 사 항		

[별지][별표 1]

공용차량 공유 이용 위반 행위별 조치 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2. “교통사고”란 이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 문	위 반 행 위	이용정지 기간
제12조제1호~제3호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미승인 운전자 무단 운전, 영리활동 이용	3년 이하
제12조제5호~제6호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1년 이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	3년 이하
제4조제5항	사전 취소 없이 미이용 또는 취소 3회 이상 반복	3개월 이하
제12조제4호, 제7호~제12호	차량 청결·안전관리·사고보고·입고기한 등 준수사항 위반	
제12조제5호 및 제6호	유류비·충전비·주차비·통행료·과태료·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미납	납부 시까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2023.

8. 2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작성자

소 속: 회계과

이 름: 장은지

직 급: 운전8급

연 락 처: 052-290-3205